

제재내용 공시

1. 조합명 : 완도금일수협

2. 제재조치(요구)일 : 2026. 07. 15.

3. 제재조치(요구)내용

제재대상	제재내용
임원	견책(1명)
직원	감봉(1명), 견책(8명), 경고(1명)

※ 향후 관련 내규 등에 따른 이의신청(재심) 처리결과에 따라 제재조치 내용이 변동될 수도 있음

4. 제재대상 사실

- ☐ 대출 취급 부적정 등
 - 신용대출 취급 및 사후관리를 부적정하게 함.

< 관련법규 >

- 「제규정관리규약」 제16조(제규정의 해석)
- 「상호금융 여신규정」제8조(신용·담보조사)
- 「상호금융 여신업무방법」제1편 제3조(여신운용의 원칙), 제8조(소요자금 대출가능한도), 제15조(대출상당), 제42조(승인대상 대출금), 제44조(승인신청서 제출서류), 제45조(승인대출금 업무처리), 제48조의3(심사대상), 제48조의4(운영), 제48조의6(업무처리), 제54조(심사사항), 제79조(대출기한 연장), 제80조의2(대출한도 운용기준), 제198조(확정채권)
- 「상호금융 여신업무방법」제3편 제2조(업무취급 원칙), 제10조(조사자료), 제11조(조사방법), 제13조(외부신용 평가서의 원용), 제15조(의무와 책임), 제18조(신용평가 방법), 제19조(평가 자료), 제21조(신용등급 산출방법), 제23조(신용등급 조정), 제38조(소요자금 산출방법), 제40조(소요자금 산정), 제42조의2(운전자금 대출한도), 제60조의8(대상), 제60조의9(대출한도), 제60조의11(대출심사 및 사후관리)